

#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(안)심사보고서

1999. 9. 16.

총무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9년 9월 9일 마포구청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1999년 9월 9일

다. 상정일자 : 제64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 ('99. 9. 16.) 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조 성 대

가. 개정이유

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과도한 규제 및 모호한 규정에 대한 정비를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과 관련,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정지 대상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삭제함(안 제9조제1항중 제1호및제2호)

-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한 때

→ 통장 해촉사유에 해당됨.

-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

→ 재력의 기준이 모호하고, 추상적임.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박 관 수)

○ 동 개정조례안은 통장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·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의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장학생으

로 선발된 자중 장학금 지급정지 대상인 안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서울특별시마포구 통·반설치조례 제5조제5항에 규정된 통장 해촉사유에 해당되어 삭제하고, 안 제9조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재력의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내용이므로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됨.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의요지(김영식 위원) :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는 장학생 선정시 학과성적등 제한규정이 있으나,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통장자녀 장학금지급대상 선정에 이러한 규정이 없음. 이는 새마을 지도자와 통장자녀간 장학금 지급대상 선정에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는데?
- 답변요지(조성대 총무과장) : 대부분의 통장은 상당부분 최일선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음. 이에 대한 보상차원이라 사료됨.
- 질의요지(신봉현 간사) : 현행조례 제1조에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·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통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, 본개정조례안에서 재력이 생겼을 때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는 삭제하는 것은 모순이 있어 목적 자체도 개정하여야 타당하지 않은가?
- 답변요지(조성대 총무과장) : 목적은 포괄적으로 정한 것으로 차후에 시범동 운영으로 통반조직이 개편되면 조례를 다시 정비할 계획임.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 안 의 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사항 : 없 음

#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1999. 8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과도한 규제 및 모호한 규정에 대한 정비를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

## 2. 주요 개정골자

-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과 관련,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정지 대상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삭제함.(안 제9조 제1항 중 제1호 및 제2호)
  -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한 때
    - 통장 해촉사유에 해당 됨.
  -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
    - 재력의 기준이 모호하고, 추상적임.

## 3. 개정근거

- 지방자치법(1999. 2. 8 법률 제5893호) 제15조

## 4. 조 례 안 : 따로붙임

## 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##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제1항 중 “제1호 및 제2호”를 삭제하고, 동항 “제3호 내지 제5호”를 “제1호 내지 제3호”로 한다.

#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급한 장학금의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# 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 (지급정지)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지급을 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<u>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한 때</u></p> <p>2. <u>장학금을 지급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</u></p> <p>3. ~ 5.(생략)</p> <p>②(생략)</p>	<p>제9조 (지급정지) ① ----- ----- -----</p> <p>1. (삭제)</p> <p>2. (삭제)</p> <p>1. ~ 3.(현행 3.~5.와 같음)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